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4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

제출자 : 달성군



## 1. 제안이유

임금 및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(제7조제1항 중 별표 1)

구분	수집·운반 수수료	
	현재	인상
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15,280원	16,960원
초과요금 (매0.1m <sup>3</sup> 마다)	1,680원	1,860원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제4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5. 10. 1. ~ 10. 21.) 결과 : 의견없음
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특이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이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노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노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노의 수집·운반수수료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분노의 수집·운반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수수료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다.

[별표 1]

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구분	수수료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16,210원	750원	16,960원
초과요금 (초과 0.1m <sup>3</sup> 당)	1,760원	100원	1,860원

- ※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비용도 포함됨
- ※ 분뇨처리는 수집·운반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을 말함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【별표 1】</b>  <b>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</b>                      (제7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20%;">부과기준</th> <th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수집·운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처리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요금 (0.75m<sup>3</sup>까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,53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,280원</td> </tr> <tr> <td>초과요금 (매0.1m<sup>3</sup>마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58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68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분뇨의 <u>수집·운반</u> 수수료에는                   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                      비용도 포함됨</p> <p>※ 분뇨처리는 수집·운반한 분뇨                      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                    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을                      말함</p>	부과기준	수 수 료			수집·운반	처리	계	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14,530원	750원	15,280원	초과요금 (매0.1m <sup>3</sup> 마다)	1,580원	100원	1,680원	<p><b>【별표 1】</b>  <b>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</b>                      (제7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20%;">부과기준</th> <th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수집·운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처리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요금 (0.75m<sup>3</sup>까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16,210원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16,960원</b></td> </tr> <tr> <td>초과요금 (초과0.1m<sup>3</sup>당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1,760원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1,860원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분뇨의 <u>수집·운반 및 처리수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</u>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                      조의 청소비용도 포함됨</p> <p>※ 분뇨처리는 수집·운반한 분뇨                      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                    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을                      말함</p>	부과기준	수 수 료			수집·운반	처리	계	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<b>16,210원</b>	750원	<b>16,960원</b>	초과요금 (초과0.1m <sup>3</sup> 당)	<b>1,760원</b>	100원	<b>1,860원</b>
부과기준	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	처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14,530원	750원	15,28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매0.1m <sup>3</sup> 마다)	1,580원	100원	1,68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과기준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	처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<b>16,210원</b>	750원	<b>16,960원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초과0.1m <sup>3</sup> 당)	<b>1,760원</b>	100원	<b>1,860원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관 계 법 령

## □ 하수도법

**제41조(분뇨처리 의무)**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2. 2. 1., 2013. 7. 16., 2020. 5. 26., 2025. 10. 1.>

②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3. 7. 16., 2025. 10. 1.>

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3. 7. 16., 2020. 5. 26.>

## 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」

**제7조(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)**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【별표 1】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·징수한다.

③ 군수는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.